# 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증권자투자신탁[국공채]
2. 주요 변경내용
   1) 판매회사 보수율 인하
   2)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. 09. 22
4. 대비표

**[집합투자규약]**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**제 39 조 (보수)** | 제3항<br>2. 판매회사보수율: 연1000분의 3.0 | 제3항<br>2. 판매회사보수율: 연1000분의 2.0 |

**[간이투자설명서]**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**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** | **<보수>**<br>판매 0.300%<br>종보수비용 0.455% | **<보수>**<br>판매 0.200%<br>총보수비용 0.355% |
| **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** | **3. 운용전문인력**<br>(생략) | **3. 운용전문인력**<br>(업데이트) |

**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**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**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 | 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<br><추가> | 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<br>2017년 09월 22일<br>- 판매회사 보수율 인하<br>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
| **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 | 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<br>(생략) | 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<br>(업데이트) |
| **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 | 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<br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br>판매회사보수 : 0.300% | 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<br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br>판매회사보수 : 0.200% |

<table>
<tr><td></td><td>보수합계 : 0.448%<br>총보수 및 비용 : 0.455%<br><br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<table><tr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<tr><td>46</td><td>144</td><td>252</td><td>573</td></tr></table></td><td>보수합계 : 0.348%<br>총보수 및 비용 : 0.355%<br><br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<table><tr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<tr><td>36</td><td>115</td><td>201</td><td>458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<td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(백만원)<br>(생략)<br><br>라. 운용자산규모<br>(생략)</td><td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(백만원)<br>(업데이트)<br><br>라. 운용자산규모<br>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td><td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br>나. 수시공시<br>(2) 수시공시<br>(추가)</td><td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br>나. 수시공시<br>(2) 수시공시<br>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<br>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<br>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br>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<br>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</td></tr>
</table>

# 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증권자투자신탁제2호[채권]
2. 주요 변경내용 : 판매회사 보수율 인하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7. 09. 22
4. 대비표

**[집합투자규약]**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**제 39 조 (보수)** | 제3항<br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3.0 | 제3항<br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0 |

**[간이투자설명서]**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**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** | **<보수>**<br>판매 0.3000%<br>총보수비용 0.4551% | **<보수>**<br>판매 0.2000%<br>총보수비용 0.3551% |
| **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** | **3. 운용전문인력**<br>(생략) | **3. 운용전문인력**<br>(업데이트) |

**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**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**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 | 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<br><추가> | **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<br>2017년 09월 22일<br>- 판매회사 보수율 인하 |
| **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 | 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<br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br>판매회사보수 0.3000%<br>보수합계 0.4480%<br>총보수 및 비용 0.4551%<br><br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| 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<br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br>판매회사보수 0.2000%<br>보수합계 0.3480%<br>총보수 및 비용 0.3551%<br><br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1년후 \| 3년후 \| 5년후 \| 10년후<br>46 \| 143 \| 251 \| 572 | 1년후 \| 3년후 \| 5년후 \| 10년후<br>36 \| 115 \| 201 \| 458 |
| **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** |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(백만원)<br><br>라. 운용자산규모<br>(생략) |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(백만원)<br><br>라. 운용자산규모<br>(업데이트) |
| **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** | 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<br>나. 수시공시<br>(2) 수시공시<br>(추가) | 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<br>나. 수시공시<br>(2) 수시공시<br>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<br>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<br>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br>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<br>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|

# 변 경 대 비 표

**1. 펀드명 :** 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**2. 주요 변경내용**
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**3. 변경효력발생일 :** 2017년 09월 22일

**4. 대비표**

**[ 간이투자설명서 ]**

| 구 분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
|---|---|---|
| **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** | **보수**<br>(생략) | **보수**<br>(업데이트) |
| **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** | **[1] 투자전략**<br>**3. 운용전문인력**<br>(생략)<br><br>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<br>(생략) | **[1] 투자전략**<br>**3. 운용전문인력**<br>(업데이트)<br><br>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<br>(업데이트) |
| **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** | 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<br>**2. 위험등급**<br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3.66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br>- (생략)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. | 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<br>**2. 위험등급**<br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3.72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br>- (생략, 현행과 동일) <삭제> |

**[ 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 ]**

| 구 분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
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**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 | 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<br>(추가) | 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<br>2017년 09월 22일<br>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<br>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
| **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 | 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<br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br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3.66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br><br>- (생략)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. | 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<br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br>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3.72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br><br>-(생략, 현행과 동일) <삭제> |
| **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 | 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<br>(생략) | 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<br>(업데이트) |
| **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** | **2.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**<br>(생략)<br><br>**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(세전기준)**<br>(생략) | **2.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**<br>(업데이트)<br><br>**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(세전기준)**<br>(업데이트) |
| **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** | 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<br>라. 운용자산규모<br>(생략) | 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<br>라. 운용자산규모<br>(업데이트) |
| **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** | **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<br>나. 수시공시<br>(2) 수시공시<br>(추가) | **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<br>나. 수시공시<br>(2) 수시공시<br>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 |

| | | |
|---|---|---|
| **필요한 사항** | | 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・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<br>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<br>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br>- 지상권・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・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・변경<br>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|